

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9-38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19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현재는 매년 인사혁신처의 「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」에 근거하여 시험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,
-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시험 관련 수당 지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시험출제, 면접, 관리업무 종사자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(안 제2조)
- 민간위원이 시험 관련 출장 시 여비 지급 근거 마련(안 제3조)

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(2023)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12. 29. ~ 2024. 1. 18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8조에 따라 안산시에
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
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수당) ① 안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「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
집행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감독·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
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으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
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 무 과 장 김 영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재채용팀장 김 태 희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철 승 (행정 3112)